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광고수입
 -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가. 징발보상금
-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해석편람 [주제 :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095, 1999.3.25.)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 60 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회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함